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2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변론 종결 2022. 10. 6.

판결 선고 2023.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거제시 C 답 1,479m²에 관하여 202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93,41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3,4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경영하던 B의 E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해, 2016. 10. 12.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21. 10. 11.까지로 하여, 2018. 10. 26. 신용보증원금 494,000,000원, 보증기한 2021. 10. 25.까지로 하여, 각 신용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에 관해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20. 8. 2.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20. 9. 15. 부실(휴·폐업 등)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20. 10. 28.경 E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원금 572,648,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3,042,884원의 합계 575,691,766원을 지급하여 B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 2020차전7394호로 B을 상대로 575,770,236원 및 그 중 575,691,766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정본이 2020. 11. 6. B에 송달되어 위 지급명령은 2020.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8. 2. 체결된 반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그 이후인 2020. 10. 28.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직 이 사건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계약은 2016. 10. 12., 2018. 10. 26.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성립된 신용보증관계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2020. 9. 15. 발생될 때까지 존속하고 있었다.

②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2020. 8. 2. 이미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2020. 8. 2.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인 2020. 9. 15.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2020. 8. 2.경 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총 348,123,195원인 반면,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총 676,220,236원으로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1]

1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
2	거제시 G 도로 1431㎡ 중 1120700분의 35956	2,575,636
3	거제시 H 잡종지 83㎡ 중 6248분의 175.6	1,950,849
4	거제시 I 도로 1,017㎡ 중 6248분의 510.6	27,368,593

1	이 사건 부동산	300,000,000
5	거제시 J 대 6㎡ 중 6248 분의 190.6	176,628
6	거제시 K 잡종지 130㎡ 중 6248분의 175.6	3,390,951
7	거제시 L 도로 682㎡ 중 12105.5분의 291.3273	920,796
8	거제시 M 도로 120㎡ 중 1120700분의 35956	215,986
9	거제시 N 임야 178㎡ 중 20분의 1	832,150
10	거제시 ○ 답 165㎡ 중 168분의 33.058	10,691,606
합계액	348,123,195	

[표2]

1	원고	구상금 채권	575,770,236
2	P은행	2021. 7. 9. 대출금	97,000,000
3	Q	2018. 7. 26. 대출금	3,450,000
합계액	676,220,236		

2)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자신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은 이유 있다.

① B은 2020. 4.경 거제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R은 그 무렵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이 사건 부동산을 312,9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R이 제작한 광고물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된 후, R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와 B이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서로 아는 사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④ R이 당초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312,9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광고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광고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 비로소 체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0,000,000원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보아도 아니한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조건 내지 특약 사항,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실제로 모두 B에게 송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범

판사김진오

판사윤성근